# 주식매매계약서

본 주식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2022년 4월 19일(이하 "본 계약 체결일")에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가길 94, 301호(중동, 디마크하우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중헌(생년월일: 1979. 11. 15.)(이하 "창업주주" 또는 "매도인대표")
- (2) <u>별지A</u> 기재 창업주주 외 매도인들(이하 <u>별지A</u> 기재 개인들을 총칭하여 "**창업주주** 외 매도인", 매도인대표와 총칭하여 "매도인들", 개별적으로 "매도인")
- (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엘리베이션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매수인")

(이하 매도인들과 매수인 중 어느 한 당사자를 지칭할 경우에는 "당사자", 이들을 총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 전 문

주식회사 루메나(이하 "대상회사")는 제품 디자인서비스 및 디자인 컨설팅업, 생활용품 도·소매업(판매업), 가정용품 도·소매업(판매업), 이에 부대하는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5번 길 98(송정동)에 본점을 두고 있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2,000주(액면가 5,000원)이다.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들은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2,000주(액면가 5,000원, 본건 거래 전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다.

매수인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추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게 본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다.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주식 중 보통주식 11,220주(액면가 5,000원, 지분율 51%, 이하 "대상주식")를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들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하게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과 계약서는 상호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에서 언급하는 모든 계약, 약정 및 문서 등은 그 변경, 추가 또는 대체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법령" 또는 "법률"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i)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고시, 지침 기타 법령적 효력이 있는 규범, (ii) 정부기관의 규정, 명령 또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 2. "본건 거래계약"은 본 계약, 본건 주주간계약 및 위 각 계약의 부속약정, 기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회사, 매도인들 및 매수인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체결되거나 이루어지는 각종 부속합의, 약정, 협약을 총칭한다.
- 3. "본건 주주간계약"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회사, 매수인 및 매도인들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해 본 계약 체결일에 대상회사, 매수인 및 매도인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주주간계약을 의미한다.
- 4. "부담"은 (i) 저당권, 질권, 유치권,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각종 담보권, (ii)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기타 사용, 수익권, (iii) 압류, 가압류, 가처분, 추심·전부명령, 체납처분 기타 집행 보전처분, (iv) 기타 해당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나 의결권에 대한 법령 또는 계약상 일체의 제약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 5. "세금" 또는 "조세"는 (i) 정부기관이 부과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관세, 기타 일체의 조세, (ii)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사회보장적 납부금및 (iii) (i) 및 (ii)에 대한 이자, 가산금, 가산세, 벌금, 과징금, 부가금, 기타 제재금 및 관련 부대비용을 의미한다.
- 6. "소송 등"은 정부기관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신청, 청구, 보전절차, 중 재, 조정, 재판상화해, 행정심판절차, 청문절차, 조사 또는 수사절차 및 기타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절차를 의미한다.
- 7. "알고 있는"이라 함은 특정 사람(특정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의미함)이 실제로 알았거나 보고, 결재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정상적으로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8. "영업일"은 대한민국 내 시중은행의 영업일(즉, 대한민국의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 9. "우려"라 함은 소송 등의 원인이나 기타 다른 문제들이 (i) 서면(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를 포함하며, 이하 본 정의 조항에서 동일)으로 주장 또는 제기되었거나, (ii) 주장 또는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서면 또는 구두의 통지가 있거나, (iii) 그러한 주장, 제기 또는 통지가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iv) 해당 소송 등의 원인이나 기타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0. "인(人)"은 개인, 조합, 법인, 협회, 신탁, 비법인 단체, 정부기관을 포함한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 11. "정부기관"은 국내 또는 국외의 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그 하위 행정기 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감독기관(한국거래소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자율감독기관을 포함함), 관청, 부, 국, 위원회와 기타 단체 또는 중재기관과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人)이나 그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하는 인(人)을 의미한다.
- 12. "정부승인"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동 사항에 대한 정부기관의 일체의 허가, 인가, 면허, 동의, 승인, 등록, 허락 또는 정부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보고 또는 신고를 의미한다.
- 13. "중대한(하게) 부정적인 영향"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건, 사유 또는 사정과 종합하여, (i) 대상회사에 관하여 그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경영실적 또는 영업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또는 변경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예상되는 사실이나 사건, 사유, 사정 또는 상황, 및/또는 (ii)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창업주주 또는 대상회사가 매수인에게 제공한 정보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제공한 정보 사이에, 회사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경영실적 또는 영업상태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iii)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상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어느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중대하게 불공정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i) 대상회사의 실사를 통해서 이미 매수인이 알고 있는 사실, (ii)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예정되어 있는 다른 계약의 체결 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조치의 이행, (iii) 매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매수인의 요청에따라 이루어진 여하한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iv)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대상회사가속한 산업의 현황 변화로 인한 경우, 기타 대상회사가 속한 산업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기타 정부규제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14. "중요계약"이라 함은 본 계약 체결일 또는 거래종결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서 대상회사가 일방 당사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관련된 일련의계약의 금액이 다음 각 목에 정한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된 일련의계약 전

체를 중요계약으로 보며, 중요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래를 정식 계약 체결 없이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중요계약으로 본다.

- 가.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매출총액의 5%를 초과하는 단일 또는 연속되는 공급계약, 또는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상 매출총액의 5%를 초과하는 단일 또는 연속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제공계약. 단, 물품 또는 용역의 단가 또는 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i) 당해 거래처에 대한 2021년 매출액 또는 지급금액, (ii) 공급자에 대한 또는 당해 구매자로부터의 과거 1년간의 지급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5% 이상의 자본적 지출을 요하는 계약
- 다. 대상회사의 지배권 변동 시 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계약 상대방이 계약 해지 등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약
- 라.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에 관한 계약
- 마.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제3자에 대한 대출 또는 제3자를 위한 보증(채무인수, 자금보충 등을 포함함)에 관한 계약
- 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 및 권리의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
- 사.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대상회사가 사용, 점 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및 기타 사용에 관한 계약
- 아. 독점금지,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달리 대상회사가 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어떠한 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
- 자.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
- 차. 대상회사가 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금 일십오억 (1,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계약
- 카. 대상회사가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 건당 금 일십억(1,000,000,000)원 이상의 파생 상품계약(환율 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을 포함하되 그에 한 정되지 않음)



- 타. 대상회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거나 손실을 분 담하는 것에 관한 계약
- 파. 대상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계약
- 하. 대상회사의 지분율 및 발행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계약
- 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협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원들이나 우리사주조합등과 집단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 너. 계약의 위반, 종료,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중단이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 적 영향을 초래하는 계약
- 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해지, 해제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
- 15. "지식재산권"은 관할 국가나 지역, 등록이나 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i)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상호사용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이들 권리를 위한 출원, 이들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및 상표, 라이선스, 영업비밀, 노하우(know-how), 연구개발 성과물, 미공개 기술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ii)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지식재산권들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를 의미한다.
- 16. "통상적인 사업과정" 또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이라 함은 어느 인(人)의 과거의 정상적인 사업수행 원칙과 관행에 부합(양적, 질적 및 빈도의 측면에서의 부합을 포함한다)하는 적법한 사업과정 내지 활동을 의미한다. 단, (i) 대상회사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사항(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ii)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및 (iii) 어느 인(人)이 영위하는 사업이 소속된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관행이나 법에 위반되는 영업활동 등은 통상적인 사업과정 또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제외된다.
- 17. "특수관계인"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한다.
- 18. "필요적 제3자승인"은,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거 래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 승인 또는 제3자에 대한 협의 또는 통지를 의미한다.
- 19. "IRR"은 본건 주주간계약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제2조 대상주식의 매매 및 매매대금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들은 대상주식인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11,220주 (액면가 5,000원)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들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각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대상주식의 수 및 각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 대금은 아래와 같다.

| 매도인                      | 대상주식 수  | 지분율    | 매매대금            | 주당 매매가액      |  |
|--------------------------|---------|--------|-----------------|--------------|--|
| 창업주주                     | 8,620주  | 39.18% | 47,018,181,818원 |              |  |
| 이우성                      | 1,020주  | 4.64%  | 5,563,636,364원  | 5 454 545 0] |  |
| 김영화                      | 320주    | 1.45%  | 1,745,454,545원  |              |  |
| 정강채                      | 320주    | 1.45%  | 1,745,454,545원  |              |  |
| 박소진                      | 320주    | 1,45%  | 1,745,454,545원  |              |  |
| 박하림<br>김미정<br>박유정<br>하성춘 | 200주    | 0.91%  | 1,090,909,091원  | 5,454,545원   |  |
|                          | 200주    | 0.91%  | 1,090,909,091원  |              |  |
|                          | 175주    | 0.80%  | 954,545,455원    |              |  |
|                          | 45주     | 0.20%  | 245,454,545원    |              |  |
| 합계                       | 11,220주 | 51.0%  | 61,200,000,000원 |              |  |

### 제 3 조 거래종결

- (1)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이하 "거래종결")은 제4조에 규정된 선행조건(단,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은 제외)이 전부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면제되었음을 조건으로, 2022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사무실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다른일시 또는 장소에서 하기로 한다(이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날을 "거래종결일").
- (2) 매수인은 거래종결 시에 매도인들이 아래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해당 서류를 매도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각 매도인별 매매대금을 각 매도인이 거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지정하여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각 매도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단, 매도인 중 창업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 중 이백억 (20,000,000,000)원은 창업주주와 매도인이 합의하여 지정한 에스크로우 은행에 창업주주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우 계좌(이하 "에스크로우계좌")에 입금하며, 위 에스크로우계좌의 개설, 입금, 인출 및 관리에 대하여는 매도인, 창업주주 및 에스크로우 은행 사이에 거래종결일에 체결될 에스크로우 계약(이하 "에스크로우계약")에 의함}
  - 2. 기타 선행조건 및 확약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매도인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및 절차

- (3) 매도인들은 거래종결 시에 매수인이 위 제3조 제(2)항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해당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대상회사가 대상주식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및 본건 거래(명확히 하면, 각 매도인별 대상주식의 매매)에 대한 대상회사의 확정일자부 승낙서
  - 2. 대상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대상회사의 주주명 부 사본(원본대조필)
  - 3. 각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 4. 대상회사의 감사가 거래종결일을 사임일자로 하여 기명날인한 <u>별첨 3.(3)-4.</u> 양식에 따른 사임서 원본(인감증명서 등 사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
  - 5.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최된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i)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 (ii)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정관 개정 및 (iii) 기타 매수인이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승인하는 내용의 대상회사 공증 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
  - 6.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상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 요한 각 매도인의 주식종류변경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위 주식종류변경 등기를 위해 필요한 매도인들 명의의 제반 서류
  - 7. 기타 선행조건 및 확약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또는 절차

## 제 4 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 (1) 매도인들이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또는 매도인들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 1. 본 계약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단, 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모두 정확하고 진실될 것

- 2. 매수인이 거래종결일까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사항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 3. 거래종결일 현재, (i) 본 계약의 이행을 중대하게 지체시키거나 위법하게 만드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고, (ii) 본 계약의 이행을 중대하게 지체시키거 나 위법하게 만드는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가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지 않았 으며, (iii) 어떤 정부기관도 본 계약의 이행을 중대하게 지체시키거나 위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것
- (2) 매수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 1. 본 계약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단, 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모두 정확하고 진실될 것
  - 2. 매도인들이 거래종결일까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사항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 3. 본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을 위하여 매도인들이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거 대종결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정부승인 및 매도인들이 득하여야 할 필요적 제3자승인을 모두 획득하였거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양해 또는 면제 받았을 것
  - 4. 거래종결일 현재, (i) 본 계약의 이행을 중대하게 지체시키거나 위법하게 만드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고, (ii) 본 계약의 이행을 중대하게 지체시키거 나 위법하게 만드는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가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지 않았 으며, (iii) 어떤 정부기관도 본 계약의 이행을 중대하게 지체시키거나 위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것
  - 5. 본건 거래계약(명확히 하면, 에스크로우계약을 포함함)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거래종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각 본건 거래계약에서 거래종결일 전에 해당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정한 사항들이 전부 이행되었을 것
  - 6.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대상회사의 감사가 그 지위에서 사임하고,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매수인이 지명하는 자가 대상회사의 이사 및 감사 로 선임되었을 것

- 7.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상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각 매도인의 주식종류변경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위 주식종류변경 등기를 위해 필요한 매도인들 명의의 제반 서류가 매수인에게 제공되었을 것
- 8.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을 것
- 9. 대상회사 및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제 5 조 진술 및 보장

- (1) 매도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u>별첨 5.(1)-1.</u> 및 <u>별첨 5.(1)-2.</u>에 기재된 각 사항을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보장한다.
- (2)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결일 현재(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u>별첨 5.(2)</u>에 기재된 각 사항을 매도인들에게 진술하고 보장한다.

## 제 6조 확약사항

-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 사이에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제4조에 규정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거래종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 확약 및 기타 의무의 위반이나, 그러한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창업주주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사이에 대상회사가 과거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창업주주는 매수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대상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i)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기타 주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그러한 주식, 사채 또는 증권

의 취득에 관한 권리의 부여

- (ii) 유·무상감자 내지 기타 자본의 감소,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 대상회사 자본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 (iii) 정관 또는 회사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변경(단, 본 계약의 거래종결 의 선행조건 및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외함)
- (iv) 해산 또는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워크아웃의 신청
- (v) 배당, 출자환급, 자기주식의 취득, 소각 또는 처분
- (vi) 사업의 변경(신규 사업 진출 포함), 중단, 합병, 다른 회사의 인수, 합작회사의 설립, 지분구조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의 체결, 분할,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또는 해약
- (vii)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요구되지 않는 임직원의 보수의 변경 (통상적인 수준의 연례적인 임금 인상은 제외),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본건 거래를 이유로 임직원(퇴직하는 임직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상여금, 특별퇴직금 등(그 명목과 이름 여하를 불문하고 본건 거래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대상회사의 임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의 지급 또는 이에 대한 약속(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부합하는 수준의 연말 특별상 여금은 제외); 통상의 사업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대량 채용, 전적 내지 해고
- (viii) 금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자본적 지출 기타 지급(관련 법령이나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외함); 금 15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사채 발행 포함하고,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외함), 제 3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담보제공, 어음의 배서 등 포함)(단, 본 항목에 따른 개별 건의 합계가 총액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매수인의 사전 동의 필요)
- (ix) 5억원 이상의 중요자산의 구매(자본적 지출 포함), 매각, 임대 또는 기타 처분행위(단, 본 항목에 따른 개별 건의 합계가 총액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 동의 필요)

- (x) 중요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해지, 취소 내지 부정적 변경
- (xi) 대상회사의 회계원칙 또는 절차의 변경(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기 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함);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 (xii) 소송 기타 분쟁의 제기, 취하, 합의 또는 화해
- (xiii) 상법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행위(단, 본 계약의 거래종결 의 선행조건 및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외함)
- (xiv) 이상의 각 행위에 대한 약속 또는 계약의 체결
- 3. 매도인들은, 대상회사의 감사가 거래종결일자로 그 지위에서 사임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u>별첨 3.(3)-4.</u> 양식에 따른 사임서(인감증명서 등 사임등기에 필요 한 제반 서류를 포함)를 거래종결일자로 징구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매도인들은 (a) (i) 매수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전에 매도인대표에게 그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선임될 자들을 통지하는 것을 전제로, 매수인이 지명한 자들을 거래종결일에 대상회사의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선임하는 내용, (ii)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상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 및 (iii) 기타 매수인이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거래종결일 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b)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i) 내지 (iii)의 안건이 모두 적법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당사자들은 거래종결일까지, 관련 법령 및 당해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본건 거래를 위해 요구되는 허가, 인가, 동의, 승인, 신고수리 등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창업주주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본건 제반거래에 필요한 정부승인 및 필요적 제3자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6.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대상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본건 거래를 완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해당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창업주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주주는 이에 응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회사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매도인들은 거래종결일까지 대상회사의 정관을 (a) 회사의 상호를 현재 상호로 변경, (b)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삭제, (c) 주식의 양도 제한 삭제, (d) 상환전환우 선주식의 발행 근거 규정 신설 및 (e) 기타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u>별</u> 첨 6.(1)-7.과 같은 내용(이하 "정관 개정안")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위 정관 개정 안에 개정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매도인들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거래종결일까지 대상회사의 2014~2021 사업연도 (총 8개 사업연도)에 대한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야 하고, 매도인들은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9. 매도인들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거래종결일까지 (i) 조립 공정이 이루어지는 창고 와 (ii)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임직원 사옥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제외), (iii) A/S 매출이 발생하는 사무실을 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매도인들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2021년도에 대한 세무신고를 관련 법 령에 따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신고서를 관련 법령 에 부합하도록 적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당사자들은 거래종결일 후에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1. 거래종결 후 본 계약을 비롯한 본건 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 다.
  - 2. 매도인대표는 거래종결 후 (a) 사유를 불문하고 대상회사와 사내이사 지위에서 가지는 위임관계가 종료한 날 및 (b) 대상회사의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i)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경쟁이 되는 영업(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경쟁이 되는 영업이라 함은 계약체결일 현재 대상회사의 정관상 사업 목적에 기재된 사업 중 대상회사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영위하거나, (ii) 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경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본 호에서 "경쟁사")의 지분인수,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투자 등 경쟁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사의 영업실적에 연동하여이익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투자(단, 장내에서 상장회사 주식을 단순투자 목적

으로 지분율 5% 미만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거나, (iii) 경쟁사의 경영진, 고문 및 직원 등으로 참여하거나, (iv) 기타 경쟁사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 제공 기타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매도인대표는 (a) 대상회사와 사내이사 지위에서 가지는 위임관계가 종료한 날 및 (b) 대상회사의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 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회사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대상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대상회사와의 계약관계 및 기타 거래관계를 종료하게 할 수 없다. 단, 대상회사의 임직원이 일반적인 채용공고 절차를 통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매수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대상회사의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5. 매도인들은 거래종결일 직후 대상주식(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11,220주)을 <u>별첨</u> 6.(2)-5.와 같은 내용 및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식 11,220주로 변경(이하 "주식종 류변경")함에 동의하며, 주식종류변경에 필요한 제반 절차(주식종류변경, 정관변경 등의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일체의조치를 의미함) 진행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주식종류변경에 필요한 모든 조치(동의서의 제공, 주식종류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를 취하여야 한다.
- 6. 매도인들은 거래종결일로부터 90일 내에 대상회사가 그 명례산업단지 부근 창고 임차를 통한 조립 공정과 관련하여 공장(변경)등록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비밀유지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 및/또는 이행, 본 계약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 누설하거나 또는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제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본 계약에 따른 어느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경우(단, 공개하는 당

## 별첨 6.(2)-5.

###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건 및 내용

I. 주식종류변경 대상 보통주식의 수

| 주식종류변경 대상 보통주식 수 | 지분율   |
|------------------|-------|
| 11,220주          | 51.0% |

- II. 주식종류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본건 우선주")의 조건 및 내용
- 1. 발행회사

주식회사 루메나 (이하 "대상회사")

2. 액면가

주당 5,000원

3. 주식종류변경으로 변경되는 보통주식의 수

11,220주

4. 주식의 종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6. 배당 및 잔여재산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배당:
  - (a)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2.5%(이하 "우선배당률")로 한다.
  - (b)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즉, 참가적 우선주), 우선배당률만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즉, 누적적 우선주). 대상회사는 본 조에 따른 우선 배당을 하기 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 (c)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률은 위 (a)호와 같으며,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단, 단주 발생시에는 현금 지급).
- (d) 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는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e) 대상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 주 보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u>잔여재산</u>: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잔여재산 분 배에 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 (a)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i) 1주당 발행가액과 (ii) 잔여재산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 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이하 본 (a)호에 따라 지급되는 분배액을 "우선분배액").
  - (b) 잔여재산이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
  - (c) 보통주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보통주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 이 경우 본건 우선주는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

#### 7.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 조건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명확히 하면,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이고, 전환가액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다.
-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상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3) <u>전환가액</u>: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금 5,454,545원이다. 전환가액은 아래 제(4)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 (4)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례에 걸쳐 조정된다.
  - (a)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대상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

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기준일로 한다.

(b) 본건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 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c)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대상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T\*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T=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0.0

- \* 기발행주식수 =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1주당 발행가 격은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 \* 기준가는 대상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 항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 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d) 대상회사의 2022년,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각 확정 재무제표상 EBITDA가 각 연도별 아래 표의 금원(이하 "목표경영실적")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 화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 <목표경영실적>

|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EBITDA | 154억원 | 188억원 | 208억원 | 233억원 |

■ 대상회사의 2022년 확정 재무제표상 EBITDA가 목표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를 전액 보통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보유하게 될 지분의 가치(이하 "기준지분가치")가 612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가액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명확히 하면, (i) 대상회사의 100% 지분가치(본건 주식매매계약상 대상주식의 1주당 매매대금 x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순부채'를 가산하여 대상회사의 '기준기업가치'를 산정하고, (ii) 해당 '기준기업가치'를 '목표경영실적'으로 나누어 'EV/EBITDA배수'를 산정한 후, 그 '동일한 배수(EV/EBITDA 배수)'를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실제 EBITDA'에 적용하여 실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해당 값에서 '순부채'를 차감하여 100% 지분가치 산정한 후, (iii)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기준지분가치가 612억원이상이 될 수 있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 \* EBITDA: '영업이익에 유형, 무형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EBITDA 금액(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의 의견을 받은 대상회사의 2022년 감사보고서상에 기재된 EBITDA를 의미함)'에 '투자자의 재량에 따라 5억원 이내에서 2022년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전환가격 산출시 위 EBITDA 금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 \* Net Debt (순부채): '장·단기차입금, 사채 등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에서 '현금(현금성자산을 포함함),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매매증권'과 '주주간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거래종결일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투자자에게 차등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의 의견을 받은 대상회사의 2022년 감사보고서상에 기재된 수치에 의함)
- 대상회사의 2023년, 2024년 또는 2025년의 어느 확정 재무제표상 EBITDA 가 해당 연도의 목표경영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위 제(3)항에서 정한 최초 전환가액으로 조정된다.
- (e) 대상회사의 기업공개 시 본건 주주간계약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적격 상장을 위한 가격조건(이하 "적격상장 가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합 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환가액은 매수인이 주당 IRR 12%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명확히 하면, (i) 본 항에서 '적격상장 가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 는 경우'란 어느 기업공개 절차의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위하여 제시하는 공모희망가격 범위의 최하단 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값이 주당 투자원금에 IRR 12%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ii) IRR은 본건 주주간계 약에 정의된 바에 의한다.
- (5) 전환절차: 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게 1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 (6) 전환청구 기간: 본건 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전



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 전환청구 절차: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청구서 2통에 주권(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위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8) 전환의 효력발생: 보통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 (9) <u>수권주식의 수</u>: 대상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존속하는 동안 본건 우선주에 관한 전 환권을 수시로 행사하기에 충분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의 수를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 (10) <u>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u>: 대상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 8. 상환에 관한 사항

(1) <u>상환권자</u>: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아래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회사에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상환기간, 상환가액:

0 0 0 0 0 0 0 0 0 0

00000

- (a) <u>상환기간</u>: 본건 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b) <u>상환가액</u>: (i) 본건 우선주 1주에 대한 매매대금 및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본 건 거래의 거래종결일로부터 실제 상환가액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IRR 8.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IRR은 본건 주주간계약에 정의된 바에 의한다.
- (3) <u>상환재원</u>: 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 (4) <u>상환방법</u>: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상환의 의사, 상환대상 본건 우선주의 수 및 행사연원일을 기재한 서류(이하 "상환권행사통지서")를 대상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상환권 행사"). 상환권 행사가 있는 경우 대상회사는 해당 본건 우선주보유 주주에게 상환권행사통지서 상의 행사연월일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이하 "상환기일") 상환권이 행사된 수의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상환가액 전액을지급함으로써 해당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5) <u>지연이율</u>: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가 본 조에 따라 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해당 상환기일에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상환가액 및 해당 금액에 해당 상환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15% 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